

건설기계양도증명서(매매업자 거래용)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 양도인 (인감날인 또는 서명)

건설기계매매계약서

건설기계등록번호		매매금액	일금 원정
건설기계명		계약금	년 월 일 일금 원정
형식		중도금	년 월 일 일금 원정
차대번호		잔금	년 월 일 일금 원정
최초등록일	년 월 일	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	일금 원정

제1조(당사자표시) 양도인을 “갑” 이라 하고, 양수인을 “을” 이라 한다.

제2조(동시이행 등) “갑” 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“을” 에게 인도하기로 한다.

제3조(하자담보책임) 건설기계매매업자(이하 “매매업자” 라 한다)는 “갑” 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·상태점 검기록부를 통하여 “을” 에게 알려야 하며, “을” 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“갑”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다만,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(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).

①보증기간: 인수일부터 ()일 또는 () km 또는 () hr

②보증내용: ()

제4조(사고책임) “을” 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

제5조(법률상의 하자책임)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미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“갑” 이 그 책임을 진다.

제6조(해약금) “갑”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“갑” 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“을” 에게 배상해야 하며, “을”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“을” 은 “갑” 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.

제7조(등록지체책임) 매매업자는 “갑” 과 “을” 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8조(계약서)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,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.
특약사항

계약연월일		년 월 일		
계약당사자	양도인(갑)	성명(명칭) 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	(인감날인) (전화:)	
	양수인(을)	성명(명칭) 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	(인) (전화:)	
	건설기계매매업자	허가번호 및 상호	제 호	제 호
		대표자	직인	직인
	취급자	인	인	

※ 주의사항

- 이 양도증명서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.
-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